

전주지방법원 2018. 4. 17 선고 2017가단23334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전 문

원 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피 고 A

변론 종결 2018. 3. 20

판결 선고 2018. 4. 17

주 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1996. 12. 31. 접수 제2804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B가 금산농업협동조합(이하 '금산농협'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 음에 있어 그 이행을 보증하였는데, B는 금산농협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변제를 지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L 9. 28. 금산농협에게 B의 대출금 채무 합계 46,882,423원을대위변제하였다.

나. 원고는 B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7차전1338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 고,B에게 153,192,007원 및 이 중 46,882,423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지급명령이송달되어 2017. 3. 7.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B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위 지급명령에 따른 구상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았고,무 자력상태이다.

라. 한편,B는 1996. 12. 30. 그 소유인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외 C와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C에게 채권최고액 30,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C으로 하는 주문 제1항 기재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마. C은 2006. 8. 25. 사망하였는데,그 상속인들 중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 은 모두 전주지방법원 2006느단700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06. 11. 27.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존재하지 않거나 그 성립일로부터 10년,또는 피고가 C으로부터 이를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는 2006. 6. 17.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이 사건 근저당권은 그 등기원인이 소멸하여 말소되어야 하고,원고는 B에 대한 채권자로서 무자력인 B의 피고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을대위행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이 1996. 12. 24. B에게 3,000만 원을대여하면서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고, 피고가 2006. 6. 17. C과 함께 B를 만나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받았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유효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B와 C 사이에 1996. 12. 24.자로 B가 C으로부터 3,000만

원을 변제기 1997. 12. 말일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가작성된 사실,위 차용증서의 말미에 'A 귀하 2006. 6. 17'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인정된다.

그러나,위 인정사실만으로는 C이 1996. 12. 24. 실제로 B에게 3,000만 원을대여하였다거나 2006. 6. 17. C의 B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피고에게 양도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피고의 주장과 같은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이 사건 소가 위 대여금채권의 양도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후인 2017. 9. 25.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이 사건 소제기 전에 이미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C의 단독상속인으로서 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 한다.

판사 장인혜

별지